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  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(현행 제2조의2 삭제)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5호, 제4조제1호 및 제3호, 현행 제10조제2항 삭제)
-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(안 제10조제1항)
- 관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# 2) 주요 내용

-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(현행 제2조의2 삭제)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(2019. 1.15)에 따라 임의규정인 자활기금 자활기금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문을 삭제함

- 자활기금은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근로를 통한 수입금 등의 일부를 공제형식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기여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짐.

따라서 자활기금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, 그 재원은 자활사업에만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 설치 근거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5호, 제4조제1호 및 제3호, 현행 제10조제2항 삭제)
-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(안 제10조제1항)
- 관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4조)
 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 ” 을 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으로 변경함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, 관련 조항 등의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